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보훈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보훈대상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지급대상에 대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3에는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023년 1월 1일 현재 조례가 시행되기 전(前)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양천구 보훈예우수당을 중복지급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대상에 사망위로금 및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망위로금 200,000원, 보훈예우수당 47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① 관련자 의견

관련자들은 ㉡의 경우 2022년 1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의 직권지급 요청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양천구 보훈수당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 중복 지급하였으며, ㉢는 ○○○○과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회신받아 ‘거주자’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검토 의견

㉡ 지급대상자 확대 및 수당 종류 선택 기간의 필요가 조례 위배사항에 대한 중복지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중복 지급된 이후에도 상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등 중복 지급 사항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였고

㉢ 사망위로금 담당자와 보훈예우수당 담당자가 동일하여 각 수당 지급 시 대상자 및 내역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였던 바

각 수당의 부적정 지급 상황이 불가항력이었다거나 정당했다는 관련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과다 지급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670,00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